

학업성적평가 규정

제정 1995. 3. 1

개정 2021. 10. 1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의 학업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(단, 신학대학, 의과대학, 간호대학은 제외).

제2조(성적 평가) ① 교과목별 성적 평가의 등급분류는 학칙 제40조 제1항을 적용 한다. [개정 2017.6.23]

② 성적은 매학기 중간 시험, 학기말 시험, 논문, 실기·실습 보고서, 개인 연구 보고서, 출결 상태와 평소의 수업 참여도 등에 의하여 평가하며, 출결 상태는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현장 실습과 같이 등급별 평가가 어려울 때에는 'P'(합격) 또는 'F'(불합격)로 평가하며 'P'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한다. 단, 과목의 성격에 따라 'P'를 A⁺, A⁰로 평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평점평균 산출에 포함시킨다.

④ 평점 평균은 소수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산출하며 산출 방법은 평점의 총합계를 총신청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⑤ 학칙 제39조에 의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교과목을 낙제 처리할 수 있다.

[개정 2008.9.1]

제3조(평가방법) ①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각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은 별표 1를 따른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[개정 2017.6.23]

② 외국인교환학생, 시간제입학생,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외국인특별전형입학생은 상대평가에서 제외 한다. [개정 2017.6.23]

③ 계약학과의 성적평가 방법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조의2(상대평가 예외적용 과목) ① 다음 각호의 등급별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. [신설 2017.6.23]

1. 수강인원 10 ~ 19명인 과목

2. 자격증을 받기 위한 과목(교직, 평생 교육, 군사학)

3. 실습 또는 실기과목 중, 교과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과목 (단, 자연계 실험 과목 제외)

② 다음 각호의 등급별 비율은 절대평가를 적용한다.

1.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

2. 외부현장실습과목

3. 캡스톤디자인과목

4. 외국어강의[신설 2021.10.13]

5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교과목[개정 2021.10.13]

제4조(학점 초과 취득 자격) 전학기 평점 평균이 4.00 이상인 자(복학생 포함)에 대하여는 학점초과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.

제5조(성적 관리) ① 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과목별 성적확인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시험답안

지는 전공에서 자체 보관한다. 단, 시험에 의하지 아니한 교과목은 성적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[개정 2006.12.19., 2017.4.7]

- ② 학기별 성적은 개인별로 작성하여 학생에게 교부한다. 단, 최종 학기 성적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추가 시험 성적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부하지 아니한다.
- ④ 성적자료 보관연한은 최소 5년으로 한다. <신설 2019.12.3.>

제6조(기간 내 성적 확인 및 정정) ① 학생은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[개정 2006.12.19]

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.[개정 2006.12.19]

제7조(기간 외 성적 확인 및 정정) ①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적 확인, 이의 신청 및 성적 정정을 할 수 없다. 단, 불가피한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[개정 2006.12.19]

② 성적 정정 신청서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각서를 첨부하여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기간 종료 후 4주 이내 전공주임(학과장), 학부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한다.[신설 2006.12.19]

③ 교과목 담당 교수의 성적 정정 신청서와 그 결과는 성적표에 반드시 이를 첨부하여 보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③ 이 규정은 199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, 1997학년도 8월 25일부터 적용한다.

④ 본 개정 규정(제4조)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⑤ 본 개정 규정(제2조)은 200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되, 2003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.

⑥ 본 개정 규정(제3조)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하되, 2005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.

⑦ 본 개정 규정(제6조, 제7조)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0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 1항은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고 제3조 2항1호는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(제3조)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(별표 2)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1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되,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5조)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, 제3조, 제3조의2, 별표1, 별표2)는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되,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규정(제5조)는 201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하되,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3조의2)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[개정 2017.6.23]

| 등 급 | 비 율 |
|------|--------|
| A | 30% 이하 |
| A+B | 70% 이하 |
| C 이하 | 30% 이상 |

○ <별표 2> 상대평가 비율 [개정 2013.9.5., 2017.6.23]

| 등 급 | 비 율 |
|------|--------|
| A | 30% 이하 |
| B 이하 | 70% 이상 |

○

○